

2026. 2. 9.

내용증명 우편발송

주주제안서

발신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최영익, 이재우, 이종은, 한동훈, 이진아)
서울 서초구 주흥6길 39(반포동, 넥서스빌딩)
전화: 02-549-5056, 팩스: 02-549-5008
[제안자: Palliser Capital Master Fund Ltd, Palliser Capital Centenary Fund I]

수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이사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귀중

- 귀사의 발전 및 이사님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 본 주주제안서는 귀사의 주주인 위 제안자를 대리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본 주주제안일 현재 귀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총 365,984주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귀사의 주주입니다(제안자 각 소유자증명서 참조).
- 위 제안자는 장래 회사의 발전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363조의2 제1항에 기하여 귀사의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의 의안을 제안하오니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는 지체 없이 위 의안을 동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포함하고 제안자가 기재한 의안의 요지 등 주주제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하는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자에게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제안자의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2025. 12. 31. 기준일자의 주주명부(당해 주주의 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5. 본 주주제안서에 대하여는 위 발신인에게 제안된 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확인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소집공고일 또는 2026. 2. 19. 18:00시 중 이른 날짜까지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주주제안서와 관련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역시 위 발신인의 담당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별지 1 의안의 표시
2. 별지 2 주주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안자 각 위임장
4. 제안자 각 소유자증명서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최 영 익

담당변호사 이 재 우

담당변호사 이 종 은

담당변호사 한 동 훈

담당변호사 이 진 아

별지1

의안의 표시

제1-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

	변경 전	변경 후
제14조의3 (권고적 주주 제안)	(신설)	<p>①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이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 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령 또는 이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더라도 회사의 지배구조, 자본 배분 정책, 임원 보상 정책 및 주주환원 정책 등 주주 및 회사 이익 보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권고적 주주제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 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이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제18조의 방법으로 하되, 그 결과는 당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p> <p>⑤ 권고적 주주제안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가결된 경우, 회사는 주주제안이 있었던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이행 여부 및 구</p>

		체적인 이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1-2호 의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제1-1호 의안 가결 시)

가. 의안 제목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나. 의안의 요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포함하고, 매 분기마다 회사가 NAV 할인율을 산정 및 검토하여 공개하도록 권고함.

제1-3호 의안: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 (제1-1호 의안 가결 시)

가. 의안 제목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

나. 의안의 요지

회사의 보상위원회가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i) 경영진 보상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ii)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준 경영진 보상에 관한 핵심성과지표(KPI) 중의 하나로 반영함으로써 주주 친화적 보상체계의 수립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권고함.

제1-4호 의안: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 보강의 건 (제1-1호 의안 가결 시)

가. 의안 제목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 및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 보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이사회가 LG 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을 기준 발표 수준인 70%의 미만으로 낮추고 추가로 확보한 자금으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여 2026. 1. 29.자 공시 주주 환원 정책을 보강하고, 상기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권고함.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선임독립이사 선임)

	변경 전	변경 후
제23조의1 (선임독립이 사)	(신설)	<p>① 이사회는 독립이사(본 조의 독립이사는 이 정관의 사외이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하 같다) 중 1인을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독립이사(“선임독립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선임독립이사는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p> <p>② 선임독립이사의 임기는 해당 독립이사의 임기로 한다.</p> <p>③ 선임독립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독립이사 의견 수렴 및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전달 이사회 일정, 안건 부의 제안 등 이사회 운영 관련 협의 주주, 이사회, 경영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 면담 및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주주 의견 수렴 결과 전달 독립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 전달 등 지원 <p>④ 이 회사는 선임독립이사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별지2

주주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제1-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

제안자는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회사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인게이지먼트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안자는 반복적으로 회사의 벨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제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제안자가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확인한 점은, 회사의 구조적 저평 가와 자본배분 및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 인식이 특정 주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수의 주주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수준에 그쳤고 시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실망감을 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투자자들 간에 뚜렷하게 형성된, 회사의 저평가에 대한 집단적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안자의 문제 제기 사항을 어떻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독립이사와 직접 소통하기 위한 제안자의 무수한 시도에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이사회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체 주주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요청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더 이상 비공식적·개별적 소통만으로는 이사회와 시장 모두에 주주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기존에 회사에 제시하였던 개선안을 수정, 발전시켜 제안자의 제안에 대한 전체 주주의 의사 를 확인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됨으로써,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주의 합리적 기대와 의견을 성실히 고려해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주들은 주가 부양의 필요성 및 주주와의 소통에 소극적인 경영진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갖고 있는바, 이사회가 주주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주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자는 일정 지분¹ 등 요건을 갖춘 주주가 권고적 주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의 건전한 제안과 의견을 정식 절차를 통해 수렴하고, 이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소통의 공식 통로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자는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그간 누적된 투자자들의 실망과 소통의 공백을 해소하고, 주주와 이사회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나. 제1-2호 의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제1-1호 의안 가결 시)

제안자는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현황진단의 항목으로, 회사의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자율적으로 공시하여 회사의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가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을 매 분기마다 공시하여 회사가 주기적으로 NAV 할인율을 포함한 재무지표를 점검하여 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의 공시에는 회사가 NAV 할인율을 산출한 방법론과 계산에 필요한 주요 지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시장에서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회사는 전례 없는 수준의 할인율로 거래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 격차(Value Gap)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AV 할인율은 회사가 보유한 핵심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서, 애널리스트와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시장 신뢰와 거버넌스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가치 격차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과 NAV 할인율에 대한 경영진 및 이사회의 문제 인식 부족은, 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구조적 저평가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회사가 2025. 11. 28.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은 심각한 규모의 NAV 할인율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가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회사의 명확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후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¹ 제안자는 주주가 권고적으로 주주제안을 하기 위하여는 상법 상의 주주제안권(제542조의6 제2항)과 동일한 지분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권고적 주주제안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경영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안자는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포함하고, 매 분기마다 이행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회사가 해당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치 격차 해소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 제1-3호 의안: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고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 (제1-1호 의안 가결 시)

최근 회사는 이사보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면서, 보상위원회가 보상 체계 등 등기이사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공개하였습니다². 제안자는 보상위원회가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이익과의 강력한 연계를 위해 기여한 성과를 보상에 추가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전향적으로 재검토 및 재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제안자는 보상위원회가 (i) 경영진 보상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ii)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경영진 보상의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여 경영진의 보상체계를 주주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 경영진 보상체계의 수립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2026. 12. 31.까지 공개할 것을 권고적으로 제안합니다.

그간 회사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경영진이 회사의 주식가치에 경제적으로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분히 일치되지 못한 보상 구조에서 일정 부분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글로벌 주요 자본시장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진 보상의 상당 부분을 주식연계보상으로 구성하여, 경영진이 주주와 동일한 관점에서 기업가치 및 주주수익률의 개선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구조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배당·자사주 매입 등 자본배분 의사결정 전반에서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적인 유인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안자가 제안하는 주주 친화적 보상체계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보상체계의 수립을 통해 경영진은

² 2025년 11월 LG화학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참조.

장기적인 가치 제고와 시장평가 개선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동기를 갖게 되고,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라. 제14호 의안: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 보강의 건 (제1-1호 의안 가결 시)

제안자는 회사가 구조적 저평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디스카운트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 지향적인 투자 전략과 균형 잡힌 주주 환원을 병행하는 자본 배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사는 2026. 1. 29.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연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여간 LG 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을 70% 수준까지 낮추어 유동화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후 확보 자금의 약 90%는 성장 투자 및 재무건전성 개선에, 그 외 나머지 약 10%는 주주환원 재원으로 사용하여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회사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계획이 전체 보유 지분 규모에 비추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과도한 지분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상당한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묶일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분 매각 일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 매각 대금 중 주주환원에 배정된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자금으로 집행될 성장 투자에 대해 예상 수익률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각 대금의 주된 환원 수단으로 배당이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자기주식 매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NAV 및 내재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서,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반면 일회적 가치 이전에 그치는 배당과 달리, 자기주식 매입은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를 개선하고 회사 주식 1주 당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간접적인 지분(see-through ownership)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며, NAV 할인율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³. 즉 자기주식 매입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³ J.P Morgan와 Metrica Partners가 실시한 투자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회사의 가

주주에게 보다 유의미한 환원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2020년 물적분할을 통한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 및 2022년 상장 과정에서, 회사의 소수 주주들은 사실상 지주사 디스카운트와 유사한 효과의 가치 훼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물적분할을 통하여 소수 주주들은 회사 자산을 직접 보유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회사에 대한 지분만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자회사(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처분 및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LG화학)의 이사회와 그 선임 권한을 가진 지배 주주에 전적으로 이전되면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시장의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회사의 주가는 급락하고 할인율은 극대화되었습니다.

회사의 물적분할 및 상장은 자본 시장 전반에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지만, 소수 주주들은 회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오랜 기간 인내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회사의 소수 주주들에게 충분히 귀속되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가치 격차(Value Gap)는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은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체감해 온 가치 훼손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된 가격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이는 주주들의 자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지분(see-through ownership)을 높이고 자회사의 가치 상승 및 성장, 배당 등의 과실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과거 분할 과정에서 약화된 가치 귀속 구조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제안자는, 회사가 2026. 1. 29.자 공시 주주환원정책을 보강하여, 회사가 성장 투자 및 재무구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시한 재원을 유지하며 LG 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을 발표한 70% 미만 수준으로 낮추어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하고, 그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⁴. 자기주식 매입은 매각 대금을 활용하거나, 혹은

치 제고(value-up, NAV 할인율의 축소와 주당 내재가치의 상승을 통해 주가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명확히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⁴ 제안자의 검토 제안은 회사가 기존에 발표한 성장 투자 및 재무건전성 개선(부채 감축 및 신용도 방어 등)을 위해 배정한 재원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해당 목적을 위한 회사의 자금 사

자기주식 매입의 대가로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 기타 회사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제안자의 제안을 검토하여 2026. 12. 31.까지 실행 계획을 발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선임독립이사 선임)

제안자는 회사와의 인게이지먼트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배분 및 기업가치 제고 등과 관련한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공유·논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왔습니다. 제안자는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 또는 독립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사와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주와 이사회 간 소통이 사실상 IR 담당부서와 경영진 중심의 간접적 채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임독립이사 제도는 독립이사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해당 독립이사가 주주와의 소통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이사회에 전달하며 이사회 회의 안건의 부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이사들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안자는 선임독립이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선임독립이사가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독립이사의 집단적 판단과 문제의식이 이사회 안건 설정과 이사회 논의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는 최근 상법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합하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진 거버넌스 관행에도 부합하는 이사회 감독·소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이사회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 계획은 그대로 존중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본 제안은 이와 별도로, 추가 매각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유동성 또는 자본배분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매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